

婚禮의 變遷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hanges of Wedding Ceremony

국립진주산업대학교 생활교양학과
조교수: 黃 敬 愛

*Dept. of Living Culture
Chin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Kyung Aie, Hwang*

성신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李 吉 枝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an's University
Prof.: Kil Pyo, Lee*

본 연구는 조선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혼례의 변천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여, 그 특징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전통혼례의 창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혼례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들을 고찰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특히 조선조는 우리의 전통혼례규범이 점차 형성되던 시기이므로 전통혼례의 창조적인 계승방안을 위한 본 연구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시기 이후로부터의 변천 과정을 살펴 보기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전통혼례의 창조적·계승방안으로는 첫째, 전통혼례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요구되며, 그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기대된다. 둘째는 혼례시 물질주의와 배금주의 사상의 팽배로 인한 혼례허식과 지나친 상업주의와의 결합에 의한 반사회적 물이성적 의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째는, 전통혼례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I. 序 論

婚禮란 혼인의 意味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儀式
節次이며 사회적으로 承認된 가정형성의 절차를
의미한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혼인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始作이라는 意味와 앞날의
福되고 희망있는 삶을 기대하며 행해지는 것이므로
개인적, 가정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예로부터 婚禮란 子女를 낳아 代를 繼承하는 것이라

오늘날은 그러한 의미가 퇴색되어 家系繼承의 뜻
보다는 혼인 당사자간의 애정과 인격의 결합이며,
婚姻하는 男女 양가의 공동체적 결합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婚禮의 意味 뿐만 아니라, 외
형적인 儀禮節次도 변화되어 婚禮의 無規範,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로 인한 외형적 혼례허식, 전통혼
례의미의 왜곡, 斷絕, 무의식적 西歐化 追從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婚禮 때의 婚需 마련이나
婚禮服의 준비도 외래 서구문화와 물질중심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물질보다는 婚姻 당사자의 집안의

*본 논문은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전설성이나 傳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동방에
의지국으로서의 婚禮文化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현상에 이르렀다고 본다.

婚禮文化는 가정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중
대한 행사로 이루어지므로 한 국가와 민족의 고
유문화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면서 그
민족이 독특한 전통성과 고유성을 얼마나 주체적
으로 계승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일생을 통해 개인적, 가
정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婚禮의
변화과정을 살펴 그 특징 및 그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하고 오늘날까지 유지되어오는 婚禮
의 고유규범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婚
禮의 바람직한 모습을 모색하여 국제화 시대에서도
자국 혼례문화의 새로운 방안과 우수성을 繼承시켜
보고자 하는데 研究의 目的이 있다.

II. 研究方法

本 研究는 사회적현상 변화에 따른 婚禮의 변
천과정과 그 특징을 각 문헌을 考察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婚禮史는 단순한 婚禮의 절차를 시대별로 기술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당시 혼례의 특징을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諸般 社會環境의 변화는 一連의 婚
禮의 의미 婚禮節次, 婚需, 婚禮服에 이르기까지
변화시켰으며, 가정환경의 배경에 따라서도 혼례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假定下에 論理가
始作된다.

연구의 자료로는 민속학을 비롯한 각 분야의
연구논문을 포함하여, 史的資料의 提示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家禮의 규범서가 되었던 자료들을 활
용하였다.

本 研究의 範圍는 朝鮮時代 以後 1990年代 오
늘에 이르기까지 變化되어온 婚禮에 관해 조선시대,
개화기부터 1960년대,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로
세분하여 살펴볼 것으로 설정하였다.

III. 婚禮의 變遷에 關한 文獻考察

1. 조선시대의 혼례

1) 婚禮의 意味

조선시대는 주자학을 국가통치의 기본이념으로
내세웠던 시대였으므로 유교적 禮意識과 家禮가
보편화 되었다. 따라서 中國의 禮書는 조선조의
생활규범 및 儀禮生活에 자못 영향이 커다.

婚姻의 의미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
적이며 중요한 行事로서 큰 뜻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大自然의 攝理에 順應하는 일이며, 이러한
攝理에 따라 자연스럽게 짹을 찾는 인정에 합하는
일이 바로 婚姻이었던 것이다.

당시는 유교적 신분사회였으므로 婚禮의 의미를
論함에 있어서도 儒教의 根本 가르침이 根幹이 되고
있다는 點도 쉽게 알 수 있다. 삼강오륜이라는 유
교적 윤리규범은 인륜지대사인 婚姻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그러한 教化는 지배계층에서
부터 庶民에 이르기까지 徹底하게 지켜지도록 되어
있었다. 儒教의 家族意識에서는 祖上에서 부터 後
孫에로 血緣의 連結의 連續性을 중요시하기 때문
이다.

혼인의 의미가 個人的인 것 보다는 家系의 繼
承이나 社會秩序의 維持를 보다 크게 역김으로써,
유교사회인 조선조에서는 婚姻의 형태로 蕩妾의
制度가 公認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妻子의
지위가 低落하고 嫡子가 있는 境遇에도 妻을 두어
道德의 墟落이 慣習化한 것이지 유교정신에서 허
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齋家를 하여야 社
會生活을 할 수 있다는 原則에서 妻妾이 不和한
것을 막고 蕡妾으로 家庭의 秩序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嚴格한 禮法이 制約을 하여 왔다(琴章泰
1987, pp169-170).

또한 婚姻에는 誓父母, 誓天地, 誓配偶의 의미가
담겨 있다.

모든 婚禮節次는 이와같은 三誓精神의 意味를
담고 있어 婚姻의 意味란 단순한 夫婦結合이 아닌
매우 多樣한 뜻을 내포하고 있고, 人間의 삶에 있

어서 혼들리지 않는 中心이 되는 價值 즉, 個人 中心의 삶이 아닌 家族과 他人과의 調和되고 理致에 맞는 삶을 추구한다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2) 節 次

高麗末 朱子家禮를 典據로 한 中國의 婚禮가 導入되었으나, 實際 朝鮮朝에서 가장 普遍化된 婚禮規範은 李締(1680~1746)의 「四禮便覽」을 中心으로 한 婚禮라 하겠다.

禮記 昏義에 의하면 中國 周나라 시대부터 시행되어온 婚禮의 六禮가 明示되어 있고, 우리의 婚禮節次에 근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六禮를 集約해서 議婚, 納采, 納幣, 親迎의 四禮를 치르게 되어 있었다.

3) 婚 需

婚需란 혼인에 필요한 물건을 말하며, 남녀간의 社會的 結合體인 家族이라는 單位가 最小限度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라 할 수 있다. 고대 혼수 내용은 구체적인 記錄이 없어 明確하지 않으나 短篇의인 記錄을 通해 間接的으로 엿볼 수 있다고 본다.

三國志 魏志 東夷傳 高句麗條에서 살펴보면 돈 〈錢〉과 비단 〈帛〉은 婚需의 一種이며, 一定期間동안 妻家에서 居住후 媒家居住를 했음을 알 수 있다. 以前 記錄에서 보면 婚需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일정기간 사는데 필요한 것을 充當하기 위한 대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모두 자라서 남편의 집에 올 때도 역시 女子가 準備하는 婚需가 있었을 것으로 推測하고 있으며 高麗 때의 婚需의 豪華스러움을 警戒했던 바까지, 婚需는 時代를 거쳐가며 變化되어 왔다고 하겠다.

「小學」이나 「士小節」에도 「謝肇제가 말하기를 婚事에 財物을 論하는 것은 마침내는 男便과 아내의 道理를 망치는 것이요…」라고 하여 婚姻에 財物이나 婚需를 論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은 警戒의 글이 規範書에 많이 실려있다는 것은 實際 婚禮時 많은 婚需나 분수에 넘치는 혼수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推論해 볼 수 있다.

婚姻때 재물을 論하고 혼수의 과다문제를 경계한 것은 朝鮮時代의 前後期를 莫論하고 강조되어 온 생활의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士大夫家나 王室에서 婚姻의 사치를 금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해왔다.

일반적으로 婚需內容으로는 옷감(피록)과 옷, 옷장이나 요, 이불, 그리고 땅 문서나 씨앗종자와 같은 것들로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농경중심의 生活構造와 關係가 깊다. 이 内容은 朝鮮王朝實錄의 婚姻奢侈와 禁制의 内容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혼인 사치 금제 내용을 보면 朝鮮初期부터 끊임없이 奢侈 浪費를 排擊해 왔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왔음을 볼 수 있다. 太祖 때 婚姻時 衣服의 사치를 禁制한 것을 처음으로 하여 中宗二十六年에는 婚姻奢侈를 禁斷하는 規定을 하였다. 이러한 規制가 많았다는 것은 支配階層이나 被支配階層이나 혼인시 사치와 과다한 婚需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많았다는 것을 反證한다고 생각한다.

4) 婚禮服

(1) 新郎의 婚禮服

신랑의 예복은 紗帽團領이었는데 조선조에서 紗帽, 團領은 有官者의 常服이었는데 婚禮는 인륜의 대사라 하여 班常을 가리지 않고 이를 着用하는 것을 許容하였다.

婚禮服으로 착용하였던 것은 당상관의 官服인 黃은색(曹孝順 1982, p364)이라는 見解와 남(북청)색 官服을 입고 각띠를 띠고 그 집안 벼슬과 品階에 따라 맞추어 胸背를 달았다(유송옥 1982, p238)고도 하며 新郎 禮服의 胸背는 당상관과 같이 雙鶴의 胸背를 달았다(李順洪 1992, p324)는 등 見解가 다양하다. 이러한 주장을 보면, 신랑의 예복은 아마도 당상관의 복장인 홍단령의 雙鶴胸背 착용이 허용되었으나, 一般庶民은 감히 당상관의 복장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이순홍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의庶民의 婚禮服으로는 청단령을 着用하였고, 胸背는 문무관의 常服에서는 홍단령에는 雙鶴이나 雙虎, 清團領에 單鶴이나 單虎가

原則이나 婚禮時는 雙鶴이나 單鶴胸背를 使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벼슬에 나가지 않은 新郎은 대개 文官 당상관의 單鶴胸背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實際慣行에서 문무관의 집안에서는 그 집안의 品階에 맞는 胸背를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新婦의 婚禮服

新婦의 婚禮服으로는 桔衣(華衣), 圓衫 唐衣등이 있었다. 桔衣은 公主의 大禮服으로 外命婦一品에 해당되는 大君王子妻의 婚禮時 着用되었고, 喜禮時 妃母, 侍女, 乳母에게도 禮服으로 着用되던 것인데 一般庶民들에게도 婚禮當日과 見舅姑禮時 착용이 허용되었다.

圓衫은 高麗時代부터 朝鮮朝末까지 皇后, 妃, 嫫의 小禮服으로 内外命婦의 大禮服으로 착용되었으며, 皇后의 황원삼, 王妃의 紅圓衫, 妃賓의 紫赤圓衫, 公主와 翁主의 草綠圓衫등이 있었다. 이중 草綠圓衫은 庶民層의 婚禮式에도 그 使用이 허용되었다.

한편 女子婚禮服으로 唐衣가 着用되었는데, 唐衣는 宮中에서 常服으로 着用되었고, 明確한 時期는 알 수 없으나 일반 부녀자들의 예복으로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2. 개화기이후 60년대까지의 혼례

1) 일본식, 서양식 혼례의 유입

實際로 1920年代부터는 婚禮式의 場所가 多樣하게 變化하였다. 새로운 西歐 종교의 영향으로 예배당, 교회, 절, 신문사, 강당, 소리집 등에서 까지 婚姻式이 이루어졌다. 朝鮮總督府는 1934년 官主導의一方的인 〈儀禮準則〉을 發表하여 婚禮場所로서 新婦집 이외에 神社와 寺院 또는 教會堂을 提示하였고, 혼례복도 한복 이외에 和服, 洋服을 提案하였다(김혜선·박혜인 1993, pp145-146).

婚姻함에 있어 早婚과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모의 결정에 대한 啓蒙이 차츰 이 시기에 나타났다.

初期女流宣教師들은 여성고등교육의 필요는 여자들의 소녀기의 연장과 조혼의 예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L.E. Frey 1910, pp178-181). 그들은 早婚을 막으며, 婚姻에 책임이 따름을 啓蒙하여

“남녀간에 살림을 능히 할만한 然後에 婚姻함이 가함”을 제목으로 하여 討論을 벌이고 家族 扶養의 能力이 있는 나이에 婚姻하므로서 자녀와 가정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주장하였다.

新式宗教式婚禮가 시작된 것도 開化期로 부터다. 1907年基督教式婚禮가 처음으로公開된以來基督教人 가운데 차차 그 方式을 따른 新式婚禮를 받아들이는 수요가 늘어났다. 그즈음 佛教에서도 在來의婚禮를 脫退하고 따로 佛教式婚禮를 創案하게 되었다. 이 佛教式婚禮가 사회에 멀리 전파된 것은 1920年頃이었다.

以外에 非宗教的인婚禮는 古代의婚姻禮를 簡素化하려는 一般國民들에 의하여 考案된婚禮儀式의 하나로 朝鮮朝에서의婚禮時複雜함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점 등을 시정하고자 하는데서 자연히 찍튼 것인데, 저명인사를 주례로 칭하여 그主宰下에 新郎新婦에겐 2~3명의 들러리를 따르게 하며 新郎新婦의入場, 相見禮, 告天文朗讀, 禮物交換, 主禮辭, 祝辭, 祝歌, 祝詩, 祝典, 新郎新婦人事, 新郎新婦行進 등의順序로 이루어지고 가족대표 인사도 있다. 이와같은婚姻禮는 1945年光復以後부터 점차로擴散되었으며 6.25를 겪은 1950年代에 들어서 비로소 보편화 되게 되었다.

1950年代 初期까지만 해도 新郎은 禮式場에 비치된 黑色 禮服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신부의 경우는 웨딩드레스를 착용하였고, 드레스는 禮式場이나 복장점에서 차용하기도 하고 새로 맞추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복을 착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韓服을 입을 경우는 古俗대로 圓衫과 족도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순수한 韓服 치마저고리를 입는 수도 있는데 이때 옷 빛깔은 대개 핑크빛이다. 한손에는 꽃을 드는 것이 상례였다.一般的으로婚禮服裝은 端正하고 清潔한 옷차림을 으뜸으로 하며 신랑의 경우도 한복을 입는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고 신부는 양장이나 한복을 입을 경우다 面紗布를 썼다(김종오 1981, p365).

2) 새로운 婚姻의 登場

日本과 西洋의婚禮式이 導入되고, 各宗教別婚禮가 행해지는 가운데 傳統婚禮의 간소화를 指向하는 새로운婚姻行例가 非宗教人們 사이에는

普遍的인 婚姻의 절차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1900年代 초기로 부터 등장한 서구 혼인의 영향과 더불어, 우리의 傳統婚禮에서 強調해왔던 節次들이 複合되어 새로운 形態를 자아낸 것이다.

傳統的婚禮節次에 대해 장철수(1991)는 1930年代記錄을 보면 서울지방에서는 新婦집에서 남폐례, 교배례, 합근례가 끝나면 즉시 新婦를 맞아서 新郎집에서 席席, 즉 見面禮를 마치고 신부의 계례를 올린다. 계례란 신부의 귀밀머리를 풀어서 쪽을 짓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끝나면 큰 床을 받고 그 飲食과 함께 新郎, 新婦가 다시 新婦집으로 가서 첫날밤을 지낸다. 이튿날 아침에 新郎은 장인, 장모에게 인사를 한다음 신랑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 왔다가 밤에 다시 신부집으로 간다. 이렇게 사흘을 오고가고 한 다음에야 비로소 나흘째에 新婦를 완전히 媳家로 보낸다고 하였다.

한편 新訂儀禮便覽을 보면 193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표한 의례준칙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유교의 가례에 근거를 두어 그것을 간략화한 것으로 중추원에서 제정하였고 각 도지사와 군수의 이름으로 발간하여 그 시행을 권장하였다.

傳統婚禮는 舊習으로 그 폐해를 지적하여 대폭 간소화하도록 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 혼례복이나 혼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시기는 日本式婚禮와 西洋式婚禮의流入으로 우리의 傳統的인 婚禮의 틀이 밀려나고 점차 新式婚禮가主流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또한 門戶開放과 함께 널리擴散된 새로운 宗教의影響은 婚禮의變化에 한몫을 하였다. 이 時期에도 傳統婚禮를 지켜나가고 있는 경우도 많아 多樣하고 多國籍婚禮文化를 양산해낸 時期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過去의婚禮와 新式婚禮의 병존시기였으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傳統的인 婚俗이 점차喪失되어가는 時期에 접어들었다 할 것이다.

새로 등장한 婚禮式은 傳統婚禮의 核心的인 部分을 省略한 뒤 西洋式婚禮의 부수적인 節次를 덧붙여 進行하므로써 傳統婚禮의 全體性을 이미喪失 했다고 보는 것이다.

3) 婚需

이 시기의 혼수에 대한 내용은 문헌을 통해서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단 1930년대 발표된 新訂儀禮便覽에 제시된 바를 보면, 혼수에 사치나 과다로 인한 폐습을 계몽기 위한 내용이 있다.

우선 남폐시 新郎家에서 新婦家로 보내는 幣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古來로 부터 青紅 두끌을 존중하여 사용하였지만 世俗이 青紅 두끌외에 혼수라 하여 다양한 衣資物品을 넣고 또는 금전을 첨가하여 보내고 있어, 子女를 賣買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경계하였다. 이는 인격존중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로 排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폐습은 唐宋代부터 있어왔고 주자가례에도 司馬公의 말을引用하여 경계한 바를 재삼강조하면서 계도하였다. 그리고 于歸及調度品이라는 부분에서는 신부가 新郎家에 들어갈 때 갖고 가는 물품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보통 新婦의 일상 필수품, 사계절의 복, 침구 등 최소한도의 필요품에 그쳐야 하며 자신의 분수와 新郎家의 生活程度에 맞추어 호화롭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觀親 갔다가 돌아올 때는 신부가 예물이라 하여 土產物(衣類, 襪) 등을 가지고 와서, 시가친족에게 配分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도 폐해를 고려하여 禁止해야 한다고 하였다.

4) 婚禮服

이 시기는 西洋服飾文化의 영향을 받아 한복과 양복의 이중생활을 하였으며 婚禮服에도 같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婚禮服 관련研究는 부족하므로 本研究에서는 박경자의 “우리나라 婚禮服에 관한 일研究” 중심으로 하여 당시의 婚禮服着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의 조부모(대략 1900년대 혼인한 것으로 추정)들은 대부분 한국식 婚禮服(88.1%)을 着用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傳統的인 婚禮服飾을 着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부모(대략 1930년대~1940년대 婚姻)도 대다수가 한국식 혼례복(78.7%)을 착용하였다. 한편 신부는 한국식, 신랑은 서양식 禮服을 着用(11.1%)하는 過渡期의인 예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자신의 婚禮服은 결혼식에는 서양식 예복과 席席 드릴 때는 한국식 예복을 착용하였고, 子女婚姻 때도 자신과 비슷하게 입힐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1960년대 이후로 부터 婚禮服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을 나타내준 연구 결과라 하겠다.

그러면 1930~40년대의 婚禮服으로 신부는 한국식, 신랑은 서양식의 예복착용이 조사결과 11.1%로 나타난 것은 어떤 까닭에서인지 그 이유를 新訂儀禮便覽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즉, 치마저고리의 한복을 禮服으로 착용하도록 권장했던 바를 알 수 있다. 더우기 傳統婚禮服을 우리의 固有婚禮服으로 인정치 않는 바도 기술되어 民族의 文化的 유산에 대한 誤認을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종래의 사모관대나 원삼, 활옷등을 혼례시 필수 禮裝으로 사용했었으나 그것은 唐宋文官命婦의 制服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의미한 것으로 오히려 치마저고리를 예복으로 착용하는 것이 나을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장에 따라 30~40년대는 특히 치마저고리의 한복을 혼례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午更張以後 經濟開發以前까지의 婚禮服은 서구문화, 일본문화등의 영향을 받은 혼례식이나 婚禮節次의 다양함만큼이나 여러가지의 形態가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고 하겠다. 이는 당시의 價值觀 혼재의 현상을 나타내주는 외형적인 표현이 아니었겠는가 생각된다.

3.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혼례

1) 가정의례준칙의 제정 공포에 따른 혼례의 변화

1969年 1月 16日에는 국가시책으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는데 이는 혼례허식으로 훌려가는 번잡한 婚姻禮式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근대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실천생활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9年 3月 5일에는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政府에서는 儀禮의 本質을 망각하고 이를 輕視하거나 家庭儀禮의 基準이 모호하고 무질서해짐에 대한改善을 強調하게 提示한 것이었으나 이 준칙이 확정된 후 4년간에 걸친 정부의 강력한 啓導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實效를 거두지 못해 그 法을 改定하여 遵守를 義務化하고 處罰規定을 두어 고루

철저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온 國民이 儉素한 儀禮를 生活化하도록 努力해 왔다.

1973年 3月 13日 家庭儀禮에 관한 改定法律과 同時行令이 公布되고 동년 6月 1日 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約婚式의 書式은 1969年 發表된 書式과는 달리 좀더 수정되었으며 婚姻에 대한 儀禮 基準도 역시 補完되어 提示되었다. 가정의례법이 제정 공포된 후에 일반적으로 通用된 婚禮行禮의 節次라 하겠다. 이 儀禮法은 婚姻에 관한 規則의 影響을 받는 것으로 동법에는 違反時 法則이 명확히 制定되어 있어서 國民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데 豪華禮式을 했을 경우는 公開 警告를 하는 行政措處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례준칙의 적용으로 혼례가 이전에 비하여 다소 검소하고 간략하게 되는 경향이었고 전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려는 준칙제정시의 의도에 따라 효과를 거두었다고도 보지만 혼례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혼례의 의미가 회박해질 우려도 있었다. 또한 儀禮制定과 無關하게 脫法, 變則이 일부 階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儀禮準則의 改正以後 수년간 오히려 婚禮가 호화스럽게 이루어지는 바도 당시 婚禮의 實狀이었다.

2) 婚禮의 意味

현대사회에서의 혼례의 의미는 고대와는 다르게 變貌하고 있다. 우리의 婚姻思想은 西歐의 近代의 婚姻思想의 影響을 많이 받게 되었다. 즉 個人의 自由와 平等을前提로 한 것으로,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 의한 강제성을 배제하며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혼인은 의무가 아니며 선택적이다. 배우자의 선택이 자손을 낳고, 後嗣를 잇기 위한 目的을 앞세우지 않고 變化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婚姻思想의 影響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배우자의 선택은 개인의 주체적인 책임있는 선택과 당사자들 사이의 合意에 의한 婚姻成立이 絶對的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婚姻意識의 변화는 혼인제도와도 밀접히 關聯되어 있다. 1977년 개정된 婚姻法으로서 비로소近代의 일부 일처제 혼인이 법제화 되었으며, —

夫多妻를 許容한 朝鮮朝의 家父長制婚이 植民地 시대의 구민법에서 離婚을 許容하는 一夫一妻制로 变했으나 離婚의 原因에 있어 姦通罪를 妻에게만 適用하게 한데서 男便에게는 一夫多妻를 默認하는 不平等한 制度가 改善 되었다. 이에 분단시대에 개정한 新民法이 姦通罪를 夫婦 雙方에 離婚原因으로 규정하게 하였으며 77년 개정된 婚姻法에서는 成年이 된 男女에게 父母의 強要나 干渉없이 婚姻을 當事者들의 자유선택에 따른 合意로써 決定하게 되었다(이효재, 1990).

이러한 制度의 變化는 一般人의 婚姻意識 變化에 큰 影響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3) 節 次

婚姻節次는 앞서 지적했듯이 家庭儀禮準則의 制定 公布와 關聯하여, 일정한 新式婚의 形態가 자리잡혀 가면서 새로운 婚俗이 되어가고 있다.

婚姻節次는 다양해진 個人的 생활양식, 宗教의 影響, 新舊 婚禮의 혼재 등의 이유로 매우 各樣各色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傳統 婚禮를 따르고자 할지라도 實제로 節次를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나마 複雜하고 어렵다는 理由로 傳統을 고수해 보려는 뜻은 있지만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婚姻에 관한 現代人の 意識研究(김종오, 1981)를 보면 즉 옛 婚姻 節次를 바르게 理解하지 못하면서도 改善하면 좋은 것으로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지 못하면 그 必要性의 與否가 큰 意味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傳統婚禮節次가 앞으로 現代人們에게는 더욱 막연한 옛 풍속으로 남게될 憂慮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적인 現代婚禮節次는 자유연애혼에 의한 配偶者 선택과정과 婚姻當事者の 決定에 대한 父母의 동의를 얻는 양가의 만남, 혹은 約婚의 과정, 이후 函 보내기, 婚姻式, 幣帛, 新婚旅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節次는 傳統婚禮의 四禮 즉, 議婚, 納采, 納幣, 親迎의 구조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그 内容의 表現方式이 變化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節次中 傳統婚禮 節次는 納幣에서의 四柱와 혼서지를 포함한 函 보내기와 婚姻式後의

幣帛에서 지켜지고 있다. 傳統婚禮節次中 서구적婚姻節次의 影響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節次는 혼례식의 형식이다.

한편 納采의 節次는 約婚이나 양가 부모와 婚姻當事者들의 상견례등으로 傳統婚禮節次와 西歐的인 婚禮의 영향, 우리 社會의 여건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새로운 形式으로써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4) 婚 需

婚需는 經濟開發以後 80年代로 접어들면서 점차 豪華로워지고 있어 社會의 基本單位인 家庭이 出發點인 婚姻에서부터 物質萬能主義의 影響에 의해 商品화되는 現狀이다. 婚姻을 통한 社會的 地位上昇을 꾀하려고 無理하게 분수에 넘치는 婚需를 마련하여 소위 좋은 신랑감을 얻어 보려는 新婦側이나, 아들의 婚事를 통해 過多한 婚需나 禮綵을 要求하는 媳父母들의 思考方式이 또한 婚姻의 신성한 儀禮를 商品化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1977年末 서울, 부산, 대구등 大都市의 中產層 2천명을 對象으로 저축추진 중앙위원회가 調查(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78, p92)한 바에 따르면 한쌍의 結婚에 드는 費用은 3백 78만 5천원으로 밝혀졌고, 같은 해 日本에서 도오쿄, 오오사까등의 中產層을 對象으로 調査한 金額은 한쌍에 平均 3백 6만엔(당시 한화로 6백 13만원)으로 計算되었다. 1977年の 경우 GNP가 1천 달러 미만, 일본이 5천 달러가 될 셈 넘는 形便이고 보면 우리의 結婚費用支出이 過多한 것을 보여준다.

한편 最近 韓國 消費者보호원(1990)의 婚需實態調查 結果에 의하면, (89년도에 結婚한 新婚男女를 對象으로 함) 총 婚姻 費用이 男子는 平均 775만원, 女子는 1,057만원으로 한쌍이 結婚하는데 약 1800만원의 費用이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婚姻時 過去에는 新婦側에서 마련하는 婚需가 寢具와 廚房器具, 衣類가 고작이었으며 禮綵은 한복집, 수공예품, 벼선 등이 大部分이었다. 그러나 現代의 物質文明의 發達과 多樣한 생활용품의 量產등으로 인하여 各種 가정기기 및 자동차등 많은 品目이 婚需品으로 登場하고 있다.

오늘날 婚需의 問題는 신거주제의 普遍化의 과정

속에서, 物質에 대한 자기과시욕의 表現이나 婚姻 주관자의 子孫의 幸福과 편안한 삶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그렇게 지내오지 못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행위, 그리고 婚姻과 관계된 商業主義의 자극 등으로 인하여, 가속화되었다. 이는 婚姻 意味의 퇴색을 가져오고 있으며, 婚姻을 통한 계층 이동을 피하려는 그릇된 의식을 확산시켰고, 지나친 물질추구로 인한 婚禮의 그릇된 관행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고 본다.

5) 婚禮服

經濟開發 以後 婚禮式의 樣態가 西歐式 婚姻禮式을 爲主로 進行되고 있어 婚姻을 하는 新郎新婦는 大多數가 洋服과 웨딩드레스를 着用하고 있다.

정무장관실(1990)에서의 研究를 보면, 調查對象者들은 바람직한 신랑 婚禮服은 洋服(73.0%), 韓服(11.8%), 燕尾服(8.2%), 紗帽冠帶(6.5%)라고 하고 있고, 新婦흔해복은 흰웨딩드레스(52.0%), 화사한 한복(19.1%), 미색웨딩드레스(17.4%), 흰한복(5.3%), 활옷(4.6%)등이라고 하였다. 여성의 웨딩드레스에 대한 賛成水準의 期待는 男性보다 女性이, 農村보다 都市出身에게서, 既婚보다 未婚層에서 壓倒的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農村出身의 男性은 相對적으로 華奢한 韓服과 활옷을 바람직하게 여겼다고 分析하였다.

IV. 婚禮의 變遷에 나타난 特徵의 論議

1) 婚禮의 意味

혼례 의미의 特定적인 내용을 유도한 가정적,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時代別 婚姻의 意味는 圖 1과 같이 圖式化 하여 表現해 보았다.

2) 節 次

婚禮節次도 우리의 社會文化的 家庭的 環境 背景의 影響을 받은 바가 크다.

平生儀禮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冠婚喪祭는 朝鮮朝의 경우 儒教의 日常生活秩序, 社會生活秩序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中國 婚禮의 影響을 받은 六禮와 朱子家례의 四禮가 混用된 形態, 그리고 慣行의 婚禮 節次가

共存해 왔다.

朝鮮時代의 社會規範으로서의 婚禮節次는 法制에 비하면 그 强制性에 있어서 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성격上 道德的, 倫理的 次元에서 勸獎하거나 啓蒙하는 性格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소 강력하게 그 實行과 應用을 強要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婚姻慣行의 節次는 儒教가 社會秩序 生活秩序로 강력히 힘을 發揮하기 시작한 朝鮮朝以前부터 가지고 있던 内容과 形式이 많이 反映된 것이 아닌가 싶다. 비록 部分的으로 儒教의 婚禮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生活文化의 傳承으로 인한 새로운 生活原理로서 그러한 節次는 재편되어 행해져 왔다고 생각된다.

혼례절차는 朝鮮朝 後期, 甲午更張 以後로 日本帝國主義의 影響, 西歐 문물의 유입등으로 전통혼례라 일컬어지는 조선조의 유교중심 혼례절차와 새로운 종교적 혼례절차, 서구식 혼례절차가 공존하면서 실행되었다. 종교적 혼례절차는 그 宗教의 教理에 적합한 内容을 담는 형식으로 信者들간에 주로 따르는 것이었고, 一般人들의 경우는 諸般環境要素의 影響으로 多樣해지는 婚禮節次들이 混用되어 그것을 지켜나가게 되었다.

이른바 傳統婚禮節次와 새로이 등장한 婚姻 風俗이 部分別로 합치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傳統婚禮節次의 잔존 내용은 函보내기와 幣帛의 節次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단 그 구체적인 表現形式이 傳統的인 혼례에서와는 달리 왜곡된 부분이 있어 社會問題로 지적하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婚禮式後의 잔치는 日本植民地 時代의 影響으로 피로연, 담례품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經濟開發 以後의 婚禮節次는 家庭儀禮準則의 制定을 통하여 이른바 現代式 婚禮節次의 基準을 제시하여, 그 基準이 오늘날까지 一般的으로 통용되는 節次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단 婚姻하는 當事者들의 要件과 狀況에 맞추어 婚禮式 자체를 그간의 宗教的 틀이나 傳統婚禮節次 이외의 다양한 形式을 빌어 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생활양식의 점진적인 수용의 結果로 보며, 婚禮節



圖 1. 婚禮意味의 變化와 그 影響.

次의 規範조차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일부 新世代의 意識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婚 需

婚需의 문제는 婚姻後의 住居 規定과 關係가 깊은 内容이라고 본다. 朝鮮朝에서의 婚需에 대한 論議는 文獻에 자세하게 言及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혼례시 호화스럽거나 奢侈스런 行爲를 금할것을 說明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까닭은 대부분이 媳家居住制의 形式을 따라왔던 데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妻家居住나 新居住制를 따를 경우와는 狀況이 다르다. 특히 媳家居住나 妻家居住의 경우는 이미 이루어진 集團속에 婚姻한 男女가 흡수되는 것이므로 婚需의 内容과 性格이 비교적 명확하며 과다해질 우려도 없던 것이다.

朝鮮朝의 農耕中心의 封建的 社會構造와 經濟秩序를 벗어나 甲午更張과 經濟開發 以後 오늘에 이르면서, 우리의 經濟體制는 資本主義的인 秩序 속에서 이루어졌고, 核家族化 現狀이나 新居住制의 住居 규정이 普遍化되면서 婚需에 대한 문제가

表面化되고, 現代에는 그것을 社會問題로까지 把握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또 한편 現代에서의 婚需問題의 特徵을 婚需를 階層移動의 手段으로 利用해보려는 一部 階層의 行태로 說明할 수 있다. 婚需는 無職業者로 分류되는 女性이 男性의 社會的 地位와 經濟的能力에의 依存關係와의 交換이라는 점을前提하고 있다. 따라서 新郎의 社會的 地位와 經濟ability이 安定되고 保障된 職業일수록 婚需의 양은 相對的으로 커지거나 그것을 要求하는 목소리는 당당하고 높아지는 것이라 본다.

4) 婚禮服

(1) 新郎의 婚禮服

傳統社會에서의 신랑의 婚禮服은 그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傳統婚禮服飾은 시대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婚禮式의 영향으로 다양하게 바뀌어져 갔다.

男性 婚禮服 着用에 있어서의 변화는 몇가지의 특징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첫째, 男性들의 婚禮에 대한 주체적이고 자국적인 生活文化로써의 意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여겨진다. 時代變化에 따라, 生活의 文化나 양식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으나, 그러한 변화속에서도 우리의 것을 지켜가려는 意志가 좀더 확고했다면, 지금과 같은 다국적인 婚禮와 婚禮服을 다른 問題意識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1세기도 넘지 않은 過渡期의 사회·정치·경제상황의 변화는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우리의 婚禮文化속에서 정착되어 착용했던 婚禮服을 무가치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처럼 보인다.

세째, 남성의 婚禮服은 傳統婚禮服인 경우, 색상과 문양의 意味가 婚禮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으나, 西歐의 婚禮服으로 바뀌어지면서, 婚禮服이 지니는 婚禮의 의미는 점차 상실되어가지 않았나 한다.

네째는 오늘날 남성의 혼례복은 傳統婚禮服의 경우보다는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現代人们的 생활 양식에 맞도록 변화되어왔다고 하겠다.

(2) 新婦의 婚禮服

신부의 婚禮服도 신랑의 婚禮服과 같이 傳統婚禮服, 한복, 웨딩드레스로의 變化를 거치면서 착용되어 왔다. 變化 속에서 몇가지 특정적인 바를 논의해 보면, 첫째, 新婦의 傳統婚禮服에서의 한복, 웨딩드레스로의 변화는 우리나라 婚姻의 진정한 의미를 변질시켜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원삼, 활옷, 족두리 등의 전통 신부 혼례복은 陰陽의 조화와 이성의 결합을 象徵하는 의복으로 男女 관계가 동등한 입장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뜻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西歐의 婚禮가 소개되면서 등장한 웨딩드레스는 흰색이나 미색으로 만들어져 있고, 新婦의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男女의 동등한 결합의 의미보다는 여성의 일방적인 순결을 강조한 중세의 혼인관을 불평등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둘째는, 現代社會에서의 웨딩드레스는 상업주의와 맞물려서 좀더 호화롭고 고가로 販賣 또는 대여되는 상황을 보여, 남성 혼례복이 실용성 위주의 특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婚禮文化를 배금주의, 물질우선주의에 물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V.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本論文에서 婚禮變遷에 관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傳統婚禮의 意味와 節次에 대한 올바른認識이 요구된다. 傳統婚禮의 現代的 意味를 과소 평가하거나, 나아가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舊習인양 判斷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個人의 條件을 고려한 教育을 擴大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教育의 努力의 경주 없이는 傳統婚禮는 새롭게 복원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 教育은 具體的으로 (1) 婚姻할 年齡에 있는 子女를 둔 어머니 教育이 要求된다. 이들은 실제로 婚姻의 주관자로 婚禮의 시종 모든 일을 도맡아 意思決定을 내리기 때문이다. (2) 未婚 男性들을 위한 婚禮意味와 節次에 대한 教育이 필요하다. 拜金主義 物質主義에 젖어들 우려가 높은 婚禮 절차상에 대한 뚜렷한 基本觀念을

바르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써 婚姻關係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며, 函보내기 행사 같은 節次에 서게 된다면 올바른 행태는 어떤 것인가 등을 意識할 수 있도록 해준다. (3) 婚姻式이 이루어지는 대다수 예식장의 종업원 教育이 필요하다. 이들은 획일적인 婚姻을 職業的으로 도와주게 되므로 婚姻當事者의 기대에도 못미치는 婚姻式이 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傳統婚禮에 대한 偏見이나 誤傳된 관행을 要求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傳統婚禮節次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옳지 않은 혼례 절차를 가르쳐 줄 우려도 있으므로 이들의 教育이 要求된다. (4) 婚姻을 앞둔 未婚女性의 教育도 매우 중요하다. 女性的 教育機會 및 就業機會의 擴大로 男女平等의 思想을 普遍的으로 수용하는 女性들은 실제로는 西歐의 前近代的 사고방식의 무비판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傳統婚禮의 意味, 節次, 婚禮服등에 대한 教育이 선행될 때 傳統婚禮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늘날은 과거에 비하여 만혼현상을 보여 남녀는 인격적 사회적으로도 성숙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 되므로 주로 부모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조종되던 혼례의 불합리한 면을 당사자의 주체적인 노력이 있다면,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올바른 혼례문화로 이룩해나가는데 보다 용이하리라 생각된다. (5) 社會教育이나 放送 媒體를 이용한 教育이 효과적일 것이다.

開化期와 日帝侵略期, 6.25 등의 혼란시기를 겪으면서 傳統生活文化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文化的인 단절을 現代의 첨단 放送 媒體를 이용하여 전통혼례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보급, 확산시킬 때 전통문화는 새롭게 계승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婚禮時 物質主義와 拜金主義思想의 팽배로 인한 虛禮虛飾과 지나친 상업주의와의 결합으로 인한 反 社會的 물이성적 의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째, 傳統婚禮에 대한 스스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物質主義와 西歐 婚禮의 誤傳된 形態가 존재하는 오늘날에 비하면 우리의 傳統婚禮는 婚姻의 意味와 뛰어난 價值意識을 内包한 行禮였다고

볼 수 있다. 自國의 文化的 遺產에 대한 스스로의 자긍심과 가치를 찾지 못할 때는 國際化社會 속에서의 독특한 國家의 文化的 價值를 제시할 수 없게 되므로, 오랜 傳統生活 culture의 傳承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매우 큰 意義를 지닌다고 본다.

그러므로 傳統婚禮에 나타나 있는 婚姻의 意味와 절차상 内包되어 있는 象徵的意味의 발굴을 통해서 時代의 社會的 變動에 따라서도 變化하지 않는 持續的으로 傳承시킬 가치있는 요소를 찾아 繼承하고 創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家禮源流」.
- 2) 「孔子家語」.
- 3) 「三國志」.
- 4) 「山林經濟」.
- 5) 「星湖僊說類選」.
- 6) 昭惠王后, 「內訓」.
- 7) 宋時烈「放女書」.
- 8) 「禮記」.
- 9) 李緯, 「四禮便覽」.
- 10) 「조선왕조실록」.
- 11) 「家庭儀禮解說」保健社會部, 1973.
- 12) 琴章泰(1987). 儒教思想과 韓國社會.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 13) 金完燮(1975). 韓國婚姻考. 高麗大學校 出版部.
- 14) 金鍾鳴(1981). 韓國의 婚俗研究. 大星文化社.
- 15) 박경자(1968). 우리나라 婚禮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박숙자(1990). 都市低所得層의 婚姻 樣態 資本主義 市場經濟와 婚姻. 女性韓國社會研究會 學術研究發表會.
- 17) 朴仁德(1973). 韓國人의 結婚觀에 關한 研究. 亞細亞女性研究 12.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 18) 朴惠仁(1981). 傳統的 婚姻儀禮에 나타난 韓國家族의 性格. 女性問題研究 10. 曜星女大附設 韓國女性問題研究所.
- 19) 朴惠仁(1988).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20) 배용광·변시민(1984). 韓國社會의 規範文化. 韓

- 國精神文化研究院.
- 21) 憲虛閣 李氏(1984). 정양완 역주, 閨閣叢書. 보진재.
 - 22) 李吉杓(1982). 家禮를 通해 본 韓國人の 意識構造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 學位論文.
 - 23) 李吉杓·朱英愛(1994). 朝鮮朝 婚姻儀禮 中 見舅姑禮에 關한 研究. 生活文化研究. 8. 誠信女子大學校 生活文化研究所.
 - 24) 李吉杓·朱英愛(1989). 家庭經營觀과 婚禮行禮와 的 關係研究. 誠信研究論文集. 29.
 - 25) 李民樹(1991). 冠婚喪祭. 을유문화사.
 - 26) 李曉美(1989). 朝鮮朝 女性의 家庭教育에 대한 現代的 再照明.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27) 이행숙(1982). 우리나라 女性의 結婚意識과 婚費支出에 대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8) 이효재(1990). 資本主義 市場經濟와 婚姻. 女性韓國사회연구회, 학술발표會基調講演.
 - 29) 장철수(1991). 韓國傳統社會의 冠婚喪祭.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30) 지교현(1988). 韓民族의 精神史的 基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31) 韓國經濟史學會(1986). 韓國史時代區分論. 을유문화사.
 - 32) 韓國의 社會指標. 통계청. 1993.